

#### [서식 예]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 부동산경매에서의 배당금 청구채권)

#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관: ♦★ 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 5,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 신 청 취 지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대리운전 기사이고, 채무자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채



권자를 대리운전 기사로 불렀던 손님입니다. 채무자는 20○○. ○. ○. 전남 ○ ○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던 채권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채권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 2. 채권자는 대리운전 근무 중 야간에 손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 증세 및 두려움을 호소하여 생업이던 대리운전마저 그만두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의경위 및 결과, 채무자의 전적인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정신적 손해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3.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확인되는 채무자 소유의 "000시 000구 00동 00-00, 000동 000호" 부동산에 대해 ◇◇법원 ▽▽▽타경▽▽▽호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의 매수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 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 하더라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위 ◇◇법원

  ▽▽▽타경▽▽▽호로 수령하는 배당금을 은닉·처분할 우려가 있는바, 만일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할 경우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

  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5. 위 가압류에 대한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범죄피해자이고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별도의 공탁 등을 하지 않고도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거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형사판결문

1. 소갑 제2호증

진단서



##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 주소지 토지 및 건물)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채권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별 지]

## 목 록

금 5,000,000원

◇ 법원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부동산매각대금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배당금액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별 지 2]

##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니다.	
20 채권자(소송대리인)(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 ◇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 예

**※**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 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 여야 함)

□ 예 □ 아니오

###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 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 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	실이 있습	니까?					

□ 예 □ 아니오

- 나. ["예"로 대답한 경우]
  - ①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 ②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 아니오 →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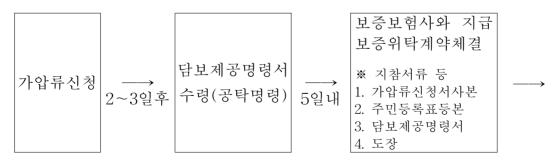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 예 □ 아니오
- 나. ["예"로 대답한 경우]
  - ①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 ②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 , , ,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출부수	,_ , , , , , , , , , ,   관련법								
	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제278조, 제246조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								
	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불복절차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								
및 기간	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								
	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								
	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								
	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비 용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기 타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								
	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 집행절차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 1. 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 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 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 2. 보증금액
    - ○부동산, 자동차 : 청구채권액(원금)의 1/10(100원미만 버림)
    - ○채권: 청구채권액(원금)의 1/5(100원미만 버림)
  -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sup>1)</sup>	청구금액의 2/5 <sup>2)</sup>	청구금액의 4/5 <sup>3)</sup>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sup>4)</sup>		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 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채권자별 구분 <sup>6)</sup>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sup>7)</sup>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 <sup>8)</sup>	소명 정도에 따라 담 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 금공탁만을 허용	재원에 내하여노 소병 성			

- 1) 변동 없음
-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 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 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